

〈특집 : 『명공서판청명집』에 나타난 송대의 법과 사회〉

## 『名公書判清明集』을 통해 본 宋代 女性의 再婚과 財産問題

우성숙\*

### 목 차

- I. 머리말
- II. 송대 여성 재혼의 양상과 판관의 인식
- III. 재혼한 여성의 재산문제
- IV. 隨母嫁子의 재산문제
- V. 맺음말

### [국문요약]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 중국 남송시대의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에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당시 분쟁의 현장에서 소송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주장을 통해 정식의 법규정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남송시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재혼과,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문제, 자식문제에 대한 복잡다양한 면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우선 송대 여성의 재혼의 양상과 재판의 담당자였던 판관의 과부의 재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있다. 즉 당시 신유학의 수요자였던 판관이 재혼을 둘러싼 소송을 다룸에 있어 이상과 현실적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지배층의 재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송대 여성이 남편 사후 수절하지 않고 재혼하면서 생기게 되는 권리 변화, 특히 재산상의 권리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재혼한 여성의 지참금부분과 전남편[前夫]의 재산에 대한 권리의 변화를 다루었다. 또한 그들이 재산에 집착한 이유를 다루었다.

끝으로 당시 여성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간 자식[隨母嫁子]의 親父와 義父집에서의 재산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상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이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중국 송대 여성의 재혼은 일반적이었다. '접각부'와 '만일 결혼 후 남편이 집을 나가 3년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재혼할 수 있다'는 여성의 재혼에 대한 법규정이 새롭게 만들어 졌다. 또한 그 당시의 판관들은 그들의 이상과는 달리 법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 여성의 재혼에 대해 여전히 개방적이었다.

송대 여성이 재혼을 할 때, 자신의 지참금 뿐 만 아니라 그로 인해 늘어난 재산, 심지어 전 남편[前夫]의 재산들까지도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결혼제도에 있어서 재산이 상당히 중요시한 경향을 알 수 있다.

당시 여성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간 자식[隨母嫁子]은 親父의 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義父의 집에서 육체적 정신적 기여를 인정받음으로써 그의 義父의 재산에 대한 권리도 인정받았다. 또한 隨母嫁子が 그의 義父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하였다.

[주제어] 재혼, 지참금, 재산, 隨母嫁子

## I. 머리말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여성들은 남존여비 관념의 지배 하에서 차별과 억압을 받아 왔다. 이 중에서도 여성의 재혼금지나 수절의 강요 등은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대로부터 정절과 관련하여 과부의 재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일종의 이상적으로 삼는 바였을 뿐 실제 사회문화적 제약이나 구속은 결코 강하지 않았다. 程朱理學이 성립되어 이학가들이 “三從四德”을 고취시켰던 송대에도 마찬가지였다. 송대 여성들은 이러한 봉건도덕과 예교의 속박 아래에서 완전히 바보스럽고, 유약하고 생명력을 결핍한 여성들은 결코 아니었다. 송대 여성의 재혼은 비난받는 일이 아니었고 또한 경시당하지도 않았다. 수절 혹은 재가는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상당히 높은 지주권이였다. 또한 송대는 당말 오대의 혼란을 극복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바탕으로 사회와 경제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이룩한 시기이다. 송대의 혁명적이라고 까지 할 수 있는 변명에서 송대 여성들이 일목을 담당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억측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송대 여성에 대한 연구와 평가는 매우 빈약하다. 19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생활방면 즉 결혼, 정조관념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여성관을 서술하는데에서 크

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학자인 仁井田陞<sup>1)</sup>과 滋賀秀三<sup>2)</sup>이 중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과정의 일부로서 다루어진 소위 ‘여지분법’을 둘러싼 송대 여성의 재산권 유무에 대한 논쟁이 있었고 두사람의 뒤를 이어 柳田節子が 송대 여성의 재산권에 대한 의미있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柳田節子<sup>3)</sup>는 여성의 재산권은 여러 가지 엄격한 제약 아래에 있었지만 법규정상에 ‘女承分’이 존재하였으며, 여성이 법적으로 재산분배를 받을 권리가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柳田節子와 견해가 일치하고 있는 논문으로는 중국학자 郭東旭<sup>4)</sup>과 위천안을 들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관련한 연구가 시도 되었다. 그런데 이방면의 연구 결과는 명확히 양분되고 있다. 즉 하나는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시대와 비교해 낮았다고 보는 견해와 다른 하나는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과 이후 시대와 비교하여 상당히 향상되었다는 견해이다.

우선 전자의 견해를 보면, 중국학자 朱瑞熙는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혼인의 자주권, 재산의 계승권, 전속, 쓰개를 중심으로 하여 논하고 있다. 당대와 비교해서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점차 권리의 박탈에 의해서 낮아졌다고 보았다. 그는 남송 理宗후기에 가면 여성의 이혼권은 거의 완전하게 박탈되고 재혼권도 날이 갈수록 점점 감소되어 가, 원·명 이후에 사람들의 여성의 정절에 대한 요구는 더욱더 가혹하게 되어 갔다고 보았다. 재산계승권의 측면에서도 송대 여성이 일정한 재산 계승권이 있었지만 唐代에 비교해서 감소하였다고 보았다.<sup>5)</sup> 이와 같은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시킨 학자로 王墨이 있다. 왕묵은 정치와 법률상에서 송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이전시대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으며, 혼인권과 재산계승권도 역시 점차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

1) 仁井田陞, 『中國法制史』(岩波全書, 1963).

2) 滋賀秀三, 『中國家族法の原理』(創文社, 1967).

3) 柳田節子, 「南宋期家産分割における女承分について」, 『宋元社會經濟史研究』(創文社, 1994).

4) 郭東旭, 「宋代財産繼承法初探」, 『宋史研究論叢』(河北大學出版社, 1990).

5) 朱瑞熙, 「第8章 宋代婦女の社會地位」, 『宋代社會研究』(中州書畫社, 1983).

한 현상의 원인을 주자학에서 찾고 있다.

이상의 내용과는 다르게 재산권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이전과 비교해 향상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郭東旭의 연구가 그것이다. 郭東旭은 『宋代財産繼承法初探』과 『宋代法制研究』(河北大學出版社, 1997)에서 송대의 계승권법이 이전의 계승법과 비교해서 현저한 발전이 있었고, 그 발전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여성의 재산에 대한 계승권의 확대라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고에서는 송대 여성의 재혼을 둘러싼 재산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그 특징적인 양상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송대 여성과 관련이 있는 사료는 풍부하지 않다.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이 문집의 작자가 묘사한 여성의 묘지명이다. 이러한 여성의 신분은 관료 혹은 사대부의 모친·처와 같은 사회 상류계층의 여성들이다. 따라서 다양한 계층에 해당하는 송대여성의 재혼의 특징을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3세기 후반 남송후기의 판례집인 『名公書判清明集』(이하 清明集)<sup>6)</sup>

6) 『청명집』의 판본은 일본의 정가당문고에서 소장된 소간본이 있다. 이것은 청명집 14권 전체를 수록한 것이 아니라 戶婚門의 일부에 관한 것만 수록된 잔본고 不分卷이다. 즉 호혼문의 권6과 권7인 누락되고 권4, 권5, 권8, 권9를 수록하고 있다. 중국 상해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명간본이 있다. 북경에서는 북경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10권본이 있는데, 이는 상해도서관 소장본과 동일한 시기에 간행된 명간본이다. 그러나 권11, 권12, 권13, 권14가 없는 잔본이다. 이러한 刊本을 이용하여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송요금원사연구실에서는 영인본인 전 2冊을 中華書局에서 1987년에 출판하였다. 本稿에서는 中華書局 영인본을 활용하였다.

『청명집』은 남송시대 연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자료로써 인식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이용하였다. 다음은 이를 활용한 연구 성과이다. 高橋芳郎氏의 「名公書判清明集」, 『中國法制史—基本資料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94)을 참조하였다.

① 형법연구로는 川村康, 「宋代折杖法初考」, 『早稻田大學』 65-4(1990); 愛宕松男, 「封案~折斷の制—송대における執行猶豫制について」, 『東方學會創立二十五周年記念東方學論集』(東方學會, 1972); 何忠禮, 「論南宋刑政未明之原因及其影響—由—<名公書判清明集>所見—」, 『東方學報(京都)』 61(1989).

② 호민·士人·書鋪·茶食人등과 같은 사회층의 연구로는 陳智超, 「南宋“喫菜事魔”新史料」, 『北京師院學報』, 1985-4; 「宋代的書鋪與訟師」, 『劉子健博士頌壽記念宋史研究論集』(東朋舍, 1989); 「南宋二十戶豪橫的分析」, 『宋史研究論文集』(浙江人民出版社, 1987); 高橋芳郎, 「宋代期の士人身分について」, 『史林』 69-3(1986); 「務限の法と茶食人—宋代裁判制度研究(一)—」, 『史朋』 24(1991).

③ 남송대 전권거래와 관련한 연구로는 仁井田陞, 「唐宋時代における債權の擔保」, 『史

에 나타나는 송대 여성의 재혼에 대한 判語를 분석·고찰함으로써 그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清明集』은 13세기 후반 즉 남송후기의 路의 사법감독관이었던 提點刑獄을 비롯하여, 提舉常平이나 知府·知州·知縣 등과 같은 판관들의 판결을 모아 놓은 판결집이다. 판결문의 내용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다. 즉 혼인과 상속, 부동산 거래와 채무 등 주로 민사적 분쟁과 관련된 것과 관료와 서리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계된 것, 세와 역의 부담을 둘러싼 문제, 승려와 군인의 범죄, 호민과 형세호 등과 같은 재지 실력자가 야기한 형사적 사건, 민간의 종교와 종교결사에 관계된 안전 등, 당시 지방사회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1차 사료가 全無한 남송시대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구체성이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아울러 당대의 법규정이라는 것은 지배자의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것이기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면을 즉각 반영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청명집』에 나타난 판례를 중심으로 당시 분쟁의 현장에서 소송당사자들의 각기 다른 주장을 통해 정식의 법규정이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을 살펴봄으로써 남송시대 사회에 있어서의 여성의 재혼과, 그리고 그로 인한 재산문제·자식문제에 대한 복잡다양한 면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먼저 II장에서는 송대 여성의 재혼의 양상과 재판의 담당자였던 판관의 과부의 재혼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즉 당시 신유학의 수요자였던 판관이 재혼을 둘러싼 소송을 다룸에 있어 이상과 현실적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당시 지배층의 재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송대 여성이 남편 사후 수절하지 않고 재혼하면서 생기기 되는 권리 변화, 특히 재산상의 권리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볼 것이다. IV장에서는 당시 여성이 재혼하면서 데리고 간 자식의 親家와 義父집에서의 재산상의 권리, 그리고 국가의 이들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검토할 것이다.

본고는 전통 중국사회의 부계위주의 가족관념하에서 여성의 수절과 개가라

『學雜誌』 42-10; 周藤吉之, 「南宋の田骨・屋骨・園骨一特に改典就賣との關係について」, 『唐宋社會經濟史研究』(東京大學出版會, 1995).

는 문제를 두고서 여성이 재혼을 선택했을지 발생하는, 특히 여성본위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로서 재산문제와 隨母嫁子의 문제를 고찰하는데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

## II. 송대 여성 재혼의 양상과 판관의 인식

송대 여성의 재혼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행하여졌다. 『清明集』에 나타나는 과부의 재혼의 양상을 살펴보면, 24건의 재혼 사례 가운데, 남편 死後 재혼한 경우가 18건(그중 접각부를 들인 경우가 2건, 관이 재혼을 허락한 경우가 2건<sup>7)</sup>, 이혼 후 재혼한 경우가 2건<sup>8)</sup>이었으며, 전체 재혼한 사례 가운데 재재혼한 사례가 4건<sup>9)</sup>이 있었다. 이 가운데 특징적인 것만 살펴보겠다. 첫째, 과부의 재혼은 통상 남편 사후 과부가 그 집을 떠나 새남편[後夫]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송대에는 도리어 새남편[後夫]될 사람을 전남편의 집으로 불러들이는 형태가 있었다. 이때 새로 불러들이는 남편을 “接脚夫”<sup>10)</sup>라 한다. 이것은 송대 여성의 재혼의 한 형태로서 새롭게 나타났다.<sup>11)</sup>

법에 접각부 제도가 있는 것은 무릇 남편이 사망하고 자식은 어려 가사를 담당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sup>12)</sup>

부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양자를 얻어 전 남편의 뒤를 잇게 하고 자신의 몸은 새

7) 『청명집』 권9 호혼문, 婚嫁「將已嫁之女背後再嫁」

8) 이것은 순수하게 여성의 自意에 의해 이혼한 경우이다. 죄를 지어 처벌을 받아 관에 의해 이혼하고 재혼하는 경우는 제외되었다. 『청명집』 권12 懲惡門, 姦穢「吏姦」; 『청명집』 권13 懲惡門, 妄訴「妄論人據母奪妹事」

9) 『청명집』 권9 호혼문, 婚嫁「嫂嫁小叔入狀」

10) 접각부에 대한 연구로는 川村康, 「宋代贅壻小考」, 임대희 譯, 『法學論攷』 제16집(1999)가 있다.

11) 郭東旭, 「宋代的婚姻家庭法」, 『宋代法制研究』(書局出版社, 2000), 435쪽 참조.

12) 『清明集』 권9 戶婚門, 違法交易, 「已出嫁母賣其子物業」

남편에게 의탁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고, 법률상으로도 금지 명문은 전혀 없다.<sup>13)</sup>

과부들은 자식이 어려 양육해야만 하거나, 가산을 관리할 수 있는 동거친이 없거나, 시부모를 떠나서는 의지할 데가 없는 경우에 접각부를 불러 들였다. 둘째, 남편이 밖에 나가[出外] 3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면 개가할 수 있었다. 이 입법은 남송기에 보이는 것으로서, 북송시기에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 송 신종 원풍년간에 백성 부택이라는 자가 外出하여 소식을 알지 못하자, 어사 황렴이 부택의 처가 개가하는 것을 허락하였다.<sup>14)</sup> 셋째, 혼인 후 남편이 죄를 지어 편관될 경우 그 처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고 이후 재혼할 수 있었다. 일례로 임신중이라는 자가 죄를 지어 편관되어 6년간 소식이 없자, 그 처 초오저는 임신중과 和離를 그에게 빙재를 돌려준 후 재혼을 하였다.

다음으로 재판을 담당하였던 판관들의 재혼에 대한 인식을 호석벽의 판결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호석벽은 3번 남편을 바꾸는 阿區에 대한 소송에 대해,

阿區가 일개 부인으로 3번이나 그 남편을 바꾸어 지조가 없는것이 진실로 심하다. 그러나 이효덕은 그녀의 시동생이면서 왜 그 운명을 좌우하려 하는 것일까. 만일 그녀가 형을 배반해서 그녀를 증오했다면 그녀가 이종룡에게 재가했을 때 그 죄를 주장하고 관계판서에 진상해야 했다. …(중략)… 지금 아구는 이종용의 동반자가 된 지 오래되었고 아구는 이미 이종용의 처가 되었다. 더 이상 이효표의 처가 아니며 곧 이효덕의 형수도 아니다. 이종용이 죽은 후에 시집을 가든 안가든, 아구가 스스로 결정해도 되는데 이효덕이 왜 관여하는 것일까. 하물며 아구가 梁蕭에게 시집갈 때는 주혼은 백부 이백간이고 送婚은 이효적이므로 결코 몰래 사람 눈을 피해 도피하듯이 한 혼인이 아니므로 더욱 그러하다. …(중략)… 이효덕은 감장100에 처하고 다른 자는 모두 방면한다.<sup>15)</sup>

13) 『청명집』 권8 戶婚門, 戶絶 「夫亡而有養子不得爲之戶絶」

14) 郭東旭, 앞의 책, 433쪽 참조

15) 『清明集』 卷9 戶婚門, 婚嫁 「嫂嫁小叔入狀」, “阿區以一婦人, 而三易其夫, 失節固已甚矣! 但李孝德乃其小叔, 豈得以制其命? 縱使以其背兄而嫉惡之, 則當其改嫁李從龍之時, 便合聲其罪, 陳之有司……今阿區其久爲李從龍之是適, 則是阿區已爲李從龍之妻, 非復李孝標之妻, 是不爲李孝德之嫂矣, 李從龍其死之後, 或嫁或不嫁, 惟阿區之所自擇, 可也, 李孝

물론 아구가 세 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이 칭송받을 일은 못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아구가 혼인을 여러 번 한 것에 대해 전남편의 형제들이 간섭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장 100대에 처하고 아구가 재혼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 권리가 있음을 지지하였다. 반면, 호석벽은 다른 판결에서 똑같은 재재혼의 경우인데도,

아상은 순검의 처였는데 불행히 남편이 죽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다. 늙었으나 자식이 없으니 그 외로움이 애처롭다 할만하다. 아상이 人心이 조금이라도 있어 단지 죽을 때 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서로 봉양하며 살고 서로 수절하여 죽었다면 전호부의 義와 같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졸곡에도 이르지 않아 갑자기 (그것을)내버리고 시어머니를 길가는 사람을 버리듯 버리고 여관을 바꾸듯 남편을 바꾸니, …(중략)… 지금 錢氏에서 徐氏, 徐氏에서 張氏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혼인하였다. 창부의 천함과 어찌 다르겠는가.<sup>16)</sup>

아상이 錢氏에서 徐氏, 徐氏에서 張氏에 이르기까지 3번이나 혼인한 것에 대해 “창부의 천함과 어찌 다르겠는가”라 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아상이 재혼을 한 것 자체를 가지고 비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한 윤리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대한 비난일 것이다.

### Ⅲ. 재혼한 여성의 재산문제

滋賀秀三氏에 의하면, 수절한 과부가 亡夫를 대위한다<sup>17)</sup>는 것은 모든 시대

德何與焉? 況阿區之適梁肅也, 主婚者族翁李伯侃, 送嫁者族叔李孝勳, 初非鑽穴相窺, 踰牆相從者比……李孝德杖一百, 餘人並放”

16) 『清明集』 卷10 人倫門, 夫婦「妻已改適謀占前夫財物」“阿常爲巡檢之妻, 不幸夫亡, 猶有姑在, 老而無子, 貧獨可哀, 阿常若稍有人心, 只當終身不嫁, 與乃姑相養以生, 相守以死, 如陳孝婦之義可也, 夫死未及卒哭, 乃遽委而去之, 棄姑如棄路人, 易夫如易傳舍, …(中略)… 今自錢而徐, 自徐而張, 至於三矣, 朝彼暮此, 何異娼優賤 (後略)…”

17) 당 호령 응분조에 “寡妻妾無男者 承夫分”라 하였고, 명칭 시대법에서는 “남편이 사망하고 아들이 없으면, 남편에게 속해 있던 것은 무엇이든 전부 그 처의 손으로 옮겨간다”라 되어



와 지역에 걸쳐 흐르고 있던 중국인의 보편적인 법의식이었으며 그 경우의 과부의 재산권은 남편을 위해 세워질 嗣子를 위해 신탁적으로 그 처의 손에 보존된다. 즉 그 처분에 있어서는 제약은 있었지만 침범할 수 없는 권리로써 남편에게 속해 있던 것을 모두 과부의 손으로 지키고 있다. 또한 남편 사후 과부의 지위는 남편의 宗에의 완전한 귀속이 이루어져 오히려 안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만약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재혼한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다. 改嫁는 처가 자기 안에 살아 있는 남편의 인격을 버리고 남편의 宗을 이탈하는 행위이며 그것에 동반하여 모든 권리를 버리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sup>18)</sup>

과연 수절하지 않고 재혼을 한다면 과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했을까? 『청명집』에 나오는 사례 가운데 여성의 재혼과 관련한 분쟁 24건 중 11건이 재산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서는 여성의 지참재산과 전남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통하여 재혼한 여성의 재산상의 권리, 특히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들이 재산문제에 집착한 이유도 고찰해 보겠다.

## 1. 지참재산

전통 중국사회에 있어서 지참재산은 여성이 혼인시에 남편의 집으로 가져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살림도구, 침구·예복등과 같은 혼인도구와 다액의 금전이나 귀금속 혹은 토지를 말한다. 혼인 후 처가에서 부부가 잘사는 것을 확인하거나 외손의 탄생을 기다렸다가 토지를 주는 것, 혹은 지참금으로 가져온 것으로 산 토지 등을 ‘粧奩田’, 혹은 ‘연분지’, 혹은 ‘첨기지’, 혹은 ‘私放地’라 하였다.<sup>19)</sup> 이것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서 처의 명의하에 독립된 재산으로 등기되지는 않았다.<sup>20)</sup> 그렇지만 그 재산은 여자의 지참금 재산으로서 분명하게 분류

있다.

18) 滋賀秀三, 앞의 책.

19) 위의 책.

20) “以法論之, …(中略)… 又自隨之產不得別立女戶, 當隨其夫戶頭, 是爲夫之產矣, 爲夫之產” 『勉齋先生黃文肅公文集』, 『郭氏劉拱禮訴劉仁謙等冒占田產』; “又法, 婦人財產并同夫爲主(後略)….” 『청명집』 卷5 戶婚門, 爭業 下 『妻財置業不係分』

되어 있었으며<sup>21)</sup>, 부부사망 후에 지참재산은 자식들에게 균분되었다. 또한 남편이 죽어 재혼할 경우<sup>22)</sup>나 귀종할 경우<sup>23)</sup>, 이혼할 경우에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sup>24)</sup> 여성들이 지참재산을 가지고 가 버릴 경우에 전남편의 집의 衆分親들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반대로 여성이 그것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부부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부부특유의 재산<sup>25)</sup>이었으나, 남편이 죽어 재혼할 경우나 귀종할 경우, 이혼할 경우에 분쟁의 소지가 되기도 하였다. 다음의 판어는,

오자순이 죽고 그 아들 오승도 죽어 오자순의 처 阿張만이 남아 持參 畝田十種정도를

21) P. B. Ebrey 著, 배숙희 역, 『중국여성의 결혼과 생활—송대여성을 중심으로—』(三知院, 2000), 182쪽 참조.

22) 『清明集』 卷10 人倫門, 夫婦「妻已改適謀占前夫財物」

23) 『徐家論陳家取去娘婦及田產』, 『勉齋先生黃文肅公文集』

24) 남송 시기 여성의 지참재산 문제는 『청명집』에 나오는 「女子分法」을 둘러싼 滋賀秀三氏와 仁井田陞씨의 논쟁을 시작으로 柳田節子, 永田三枝, 板橋眞一등에 이어지는 여성의 재산권 문제와 더불어 중요하게 다루어 지고 있다. 재혼이나 이혼시에 여성이 지참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나 없느냐 혹은 그것을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것이 여성의 재산권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학자들간의 논쟁이 있기도 하였다. 滋賀秀三씨는 당 호령 응분조의 “諸在夫家守志者 若改適 其見在部曲奴婢田宅不得費用 皆應分人均分”와 明 호령의 “其改嫁者 夫家財產及原有粧奩 並聽前夫之家爲主”라는 규정을 들어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개가할 시에는 전남편의 모든 유산과 지참재산 모두를 잃어버리는 것이 고래의 대원칙이라 하면서 다만 남송시기 판어에서는 이점이 명료하지 않고 오히려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당시의 일부 識者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滋賀秀三, 앞의 책, 1967). 반면에 柳田節子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에 그 처가 재혼할 때 처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답을 가져가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았다(柳田節子, 『南宋期家産分割における女承分につて』, 『宋元社會經濟史研究』(創文社, 1994)). 永田三枝씨는 「南宋期における女性の財産權について」(『法制史研究』 42, 1992)에서 여성의 재산권에 대하여 당·송·명·청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시도하면서 재혼시에 여성이 지참재산을 가져 가는 것은 남송의 특유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송대 이전부터 계속되어 온 이 현상이 원대이후에 금지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氏は 柳田節子씨가 이에 집착하는 것은 자허수삼씨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한 것일뿐이라고 하였다. 板橋眞一氏は 당시 판어가 지닌 애매성을 지적하면서도 처의 명의로 기록된 계약서의 법적인 유효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板橋眞一, 『宋代の戸絶財産と女子の財産權をめぐって』, 『柳田節子先生古稀記念 中國の傳統社會と家族』(汲古書院, 1993)).

25) 滋賀秀三, 앞의 책.

수중에 가지고 있었다. 말년이 되어 병과 걱정이 계속되고 따를만한 남편도 없고, 또 의지 할 아들도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된 것은 너무 가여운 일이다. 그녀가 건강했을 때에는 오씨 중에서 그녀를 불쌍히 여겨 도움을 손길을 뻗친 자가 있었다고는 들은 적이 없다. 그런데 병이 들어 죽음이 임박하자 불과 얼마 되지 않은 토지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더욱 가여운 일이다. …(중략)… 오진이라는 자가 있어 작년 2월 송장을 제출해서, 장씨의 두 명의 조카가 전지 계약서와 수확물을 훔쳤다고 고소했는데, 전임 포현지사의 판결에서는 이미 그 계약을 간파했다. 장씨가 죽자 오진은 그의 손자 오진노를 강제로 오승의 후사로 삼으려 했다. …(중략)… 오씨 본가의 존장 오군지를 출두시켜 증언을 하게 하자, “남아있는 전지는 장씨가 지참한 밭이지 오씨의 재산이 아니다”라고 하고 또 “오군문이 장씨의 詞를 위작하고 權官의 관청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원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의 도리에 어긋난 행위는 이런 상태이다. …(중략)… 현재 장씨와 오승 두 사람의 상은 모두 매장되지 않고 있다. 오군지의 진술에 따라 장씨의 지참금인 전지 중에서 필요 경비를 산출해서 그 분의 밭을 매각하고 그것으로 두 사람의 장례를 마쳐라. 조정이 장부를 준비해서 수지를 적게 하고 장례가 끝나면 일족 중의 사람들의 의향에 따라 누군가 한 명을 골라 후사로 세우고, 제사를 인수하게 한다. 한편 남은 전지는 거둬서 그에게 주고 오군문 일가는 관여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죽은 자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도 납득할 것이다. …(중략)… 오군문은 장40 형에 해당하지만 집행을 유예하고, 다시 소송을 일으키면 그것을 취소하고 처벌한다. (후략)…<sup>26)</sup>

남편과 아들이 모두 죽고 阿張이 親家로 歸宗할 때 가져간 지참재산으로 산

26) 『清明集』 卷8 戶婚門, 立繼「利其田產自爲尊長欲以親孫爲人後」, “吳子順死, 其子吳昇又死, 獨子順妻阿張在, 留得自隨壙田十餘種, 暮年疾憂交作, 既無夫可從, 又無子可從, 而歸老於張氏, 已可哀矣, …(中略)… 有吳辰者, 於去年二月入詞, 訟張氏二姪盜收田契田苗, 前官包知縣所判, 已照破其姦計矣, 及張氏之死, 吳辰又欲以其孫鎮老強爲吳昇之後, 觀其執到除附文字, 求所謂族長保明者, 乃吳子大也, 子大即吳辰也, 鎮老乃君文之子, 君文乃子大之子焉, 烏有自爲尊長, 而以親孫爲人後之理, 何其不避嫌也, …(中略)… 今張氏吳昇兩喪俱未葬, 合從吳君至所陳, 於張氏自隨田內, 量所費撥賣, 以了兩喪, 官司給簿收支, 葬筆, 於族中從衆選立一人承祀, 却撥餘田與之, 吳君文一家不得干預”

窟田 10種에 대해, 전남편 오자순의 일족 오진이라는 자가 이窟田을 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으로 2가지가 있다. 첫째, 阿張의窟田의 용도이다. 阿張은 자신의 持參窟田10종을 자신의 노후를 위해 사용하였고 判官에 의해 세워질 後嗣에게 주어 자신의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되게 된다. 둘째, “남아 있는 전지는 장씨가 지참한 밭이지 오씨의 재산이 아니다”라는 오군문의 말에서 일족들 사이에서 처의 지참재산이 衆分의 재산과 구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판어에

진규는 아들 진중용과 처 채씨가 衆分 형제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토지를 몰래 채인에게 저당잡혔다고 소송했다. 이에 채인을 소환하여 보니 “저당잡힌 것은 진중용이 처의 재산으로 산 것이다”라고 말하는 바, 토지거래문서[干照]와 上手契를 제출케 했다. 阿胡의 원래 계약서를 제출케 하여 살펴보니 진해원(解元)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으니 처의 지참금으로 산 것이 분명한 즉, 중분할 토지라고 할 수는 없다. 법에 이르길 “妻家로부터 얻은 재산은 재산 분할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라 되어 있고, 또한 법에 “처의 재산은 모두 남편과 함께 주인이 된다”라고 되어 있다. 지금 진중용이 처의 지참금에 해당하는 토지를 직접 저당 잡힌 것은 정당한 거래행위이다.<sup>27)</sup>

진규라는 자가 아들 진중용과 그 처 채씨가, 형제가 衆分해야 할 토지를 채인에게 저당잡혔다고 소송한 사건이다. 이에 判官 옹호당은 “처의 지참금으로 산 것이 분명한 즉, 衆分할 토지라 할 수 없다”라 하며, 진중용과 그 처 채씨의 거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의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의 지참재산은 同居共財 가족체제하에서 衆財로 취급되지 않았다.<sup>28)</sup> 따라서 처의 지참재산 그것 자체뿐 아니라 그것으

27) 『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 下 「妻財置業不係分」, “陳圭訴子仲龍與妻蔡氏, 盜典衆分田業與蔡仁, 及喚到蔡仁, 則稱所典係是仲龍妻財置到, 執出干照, 上手繳到阿胡元契, 稱賣與陳解元, 裝窟置到分明, 則不可謂之衆分田矣, 在法, 妻家所得之財, 不在分限, 又法, 婦人財產并同夫爲主, 今陳仲龍自典其妻裝窟田, 乃是正行交關”

28) 『唐律疏議』 卷12 戶婚, 「卑幼私輒用財物」에 “准戶令, 應分田宅及財物者, 兄弟均分, 妻家所得之財, 不在分限”라 되어 있다.

로 산 혹은 불린 재산은 부부동거시에는 부부공동의 재산이었고 남편사후 처가 남편의 집을 떠날 때 가지고 갈 수도 있었다. 그렇다면 여성의 지참재산을 둘러싸고 친척들간의 분쟁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袁氏世範』 卷1 睦親 「同居不必私藏金玉」에,

형제와 자식 조카가 함께 살면서 단독으로 자기의 재물을 많이 모아두고, 나중에 동거자에게 分析당할까 염려하여 그 재물을 팔아 금은 같은 것을 사서 몰래 간직하는데,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중략)… 또 衆財를 빼앗아 처가에 맡기고 혹 내외 姻戚의 집에 부탁하였다가 그 사람들이 써서 없어져 돌려 받지 못한다. 또 처가와 인척의 집의 재산으로 만들었다가 그 사람의 소유가 된 것도 있다. 또 아내의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었다가 본인이 죽고 아내가 개가할 때 따라간 재산도 많다. 따라서 모든 군자들은 이것을 거울삼아 주의해야 한다.<sup>29)</sup>

“아내의 이름으로 재산을 만들었다가 본인이 죽고 아내가 개가할 때 따라간 재산도 많다”라는 원채의 말이 그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편은 同居共財 상태의 가족하에서 재산을 숨기기 위한 방법으로 처의 명의로 재산을 만들었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처가 재혼할 때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여성이 재혼하면서 지참재산 명목으로 그것을 가져갈 때 전 남편의 衆分親들은 자신들의 몫일 수도 있는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의 판어에,

(오화중공사는) 전처가 이미 죽고 7세인 아들이 있다. 왕씨에게 다시 장가들었으니, 백년 동안 서로 수절하는 것은 잊은 바이다. 왕씨가 정말 현명했다면 그 남편을 섬기어 공

29) 人有兄弟子姪同居, 而私財獨厚慮有分析之患者, 則買金銀之屬, 而深藏之此爲大愚, …(중략)… 亦有竊盜衆財, 或其妻家, 或其內外姻親之家, 終爲其人用過不敢取索, 及取索而不得者多矣, 亦有作妻家姻親之家置產爲其所掩有者多矣, 亦有作妻名置產身死而妻欲改家與以自隨者亦多矣, 凡百君子幸詳鑒此止須存心.

경하고 그 자식을 양육하여 은혜를 베푸는 것이 부인의 도리임을 알았을 것이다. …(중략)… 전지를 사고 계권을 만들 때 모두다 왕씨의 장령으로 하였다. 그 법을 만든 의도는 무릇 兄弟同居家에서 처의 재산으로 재산을 사는 것은 훗날 재산을 나누는 일에 소송을 일으키는 걱정을 막기 위한 것일 따름이다. (그런데) 왕씨는 오공사를 섬기고, 위로는 시 부모를 공양하는 일이 없고 아래로는 伯叔의 각자 몫을 주는 것도 없으니 한 집안 내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모두 왕씨부부의 물건이었다. …(중략)… 오공사가 가정9년 9월에 죽어 …(중략)… 얼마지 않아 왕씨가 오공사의 재산[주머니와 전대]을 가지고 개가하였고 오여구는 재산을 다 없어지도록 명령되어 소비하여 가난해져 혼자서 지탱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서로 소송을 내게 되었다. …(중략)… 사건이 관에 이르러 자세히 조사해 보니, 오공사가 병들지 않았을 시에 가옥이 1區있었고 밭 130무가 있었고 그릇·식기가 모두 있었다. 그런데 그가 죽고 3년이 지나자 그 처와 자식이 가산을 탕진하여 남은 것이 없으니, 이들이 어찌 사람의 처라 하고 사람의 자식이라 하겠는가. 왕씨는 원래 시집을 때 가지고 온 田[自隨田] 23종, 粧奩으로써 사들인 田47종과 아울러 오공사가 살았을 때 재산[주머니와 전대]을 손에 넣고서 시집을 가면서 다 가지고 갔다. …(중략)… 오여구는 부친이 죽었을 시에 그리 어리고 어리석지 않아 만약에 질고의 돈과 물건이 있었다면 어찌 본인 스스로 처리하지 않았겠는가. 바야흐로 재산을 팔고 명령되어 그것을 소비할 때에 어찌 질고의 돈과 재산을 취하여 사용하지 않았겠는가. 계모가 시집가고 갑자기 소송이 있었는데 차라리 그것을 밝히는 것을 일찍하지 않았는가. …(중략)… 다만 왕씨는 오공사의 아내이고 오여구는 오공사의 아들이다. 만일 부부의 의리를 잊지 않았다면 어찌 자식과 모친의 정이 없겠는가. …(중략)… 왕씨는 전남편을 생각하여 유현위의 집을 산 것을 오여구에게 주어 살게 한다. 그러나 오여구가 典賣하지는 못한다. 부부와 모자간이 의절하지 않아 산 사람은 서로 편안해지고 죽은 사람 또한 지하에서 근심을 풀기를 바라노라.<sup>30)</sup>

30) 『清明集』 卷10 人倫門, 母子「子與繼母爭業」, “前室已亡, 有子七歲, 再娶王氏, 所亡百年相守者, 王氏果賢, 當知敬以事其夫, 恩以撫其子, 此婦道也, 既嫁從夫, 其心豈容有異, 續置田產, 所笠契券, 乃盡作王氏粧奩, 其立法之意, 蓋爲兄弟同居, 妻財置產, 防他日訟分之患耳, 王氏事吳貢士, 上不見舅姑之養, 下亦無伯叔之分析, 一門之內, 秋毫以上皆王氏夫婦物也, ……吳貢士嘉定九年九月死, 未幾, 王氏契囊囊再嫁, 汝丘傾貲產妄費, 貧物自支, 遂置交訟, 事既致官, 當與究竟, 吳貢士無恙時, 有屋一區, 有田一百三十畝, 器具什物具存,

후처로 들어온 왕씨는 오화중이 죽자, 오화중의 아들인 오여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집을 때 가지고 온 田[自隨田] 23종, 粧奩으로써 사들인 田47종과 아울러 오공사가 살았을 때 재산을 재혼하면서 가지고 가 버렸다. 이에 방탕한 생활로 가산을 탕진한 오여구가 소송을 낸 사건이다. 왕씨와 사랑에 빠진 오화중은 자신에게 충분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사들일 때 후처 왕씨의 장령으로 계약서를 만들었다. 따라서 판관은 계약서상에 왕씨의 장령으로 명의가 분명한 점을 들어 오여구의 소송을 물리치고 있다.

## 2. 전남편[前夫]의 재산에 대한 문제

앞에서 언급한 대로라면 과부가 수절하지 않고 재혼할 때에는 전남편의 재산을 가져갈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판어에,

직접 집을 나와 진가모에게 몸을 의지한 이상 이제는 진사언의 처가 아니다. 진사언의 처가 아니라면 즉 소조 형제의 모친이 아닌 것이다. 그 사람의 처가 아니고 그 사람의 모친이 아닌 이상 합부로 그 집의 재산을 팔고 그 아들의 불효를 책망해도 종단 말인가. (후략)… 31)

라 하여, 판관은 다른 사람과 재혼한 서씨가 전남편 진사언과 그 자식들의 재산에 간여하고 그 불효를 책망해서는 안 됨을 말하고 있다. 결국 수절하지 못한 과부는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전남편의 자식에 대한 권리를

---

死方三年，其妻其子破蕩無餘，此其所以爲人婦，爲人子哉？王氏原有自隨田二十三種，以粧奩置到田四十七種，及在吳收拾囊篋，盡挈以嫁人，……吳汝丘夫死之時，非是幼穉，若有質庫錢物，何不自行照管，方其產妄費之時，何不且取質庫錢物使用？繼母已嫁，却方有詞，無乃辨之不早乎？……但王氏，吳貢士之妻也，吳汝丘吳貢士之子也，僕未亡夫婦之義，豈獨無子母之情？……王氏以前夫爲念，將所置到劉縣尉屋子業與吳汝丘居住，仍仰吳汝丘不得典賣，庶幾夫婦子母之間不至斷絕，生者既得相安，死者亦有以自慰於地下矣……

31) 『清明集』卷9 戶婚門，違法交易「已出嫁母賣其子物業」，“自出嫁與陳嘉謀，則是不爲陳師言之妻矣，不爲陳師言之妻，則是不爲紹祖兄弟之母矣，既非其人之妻，又非其人之母，而輒欲賣其家之業，可呼，”

인정받지 못하였다. 과부는 개가에 의해 전남편의 宗을 떠나 새남편의 宗으로 들어가며, 전남편의 자식은 모친을 ‘嫁母’라 하였다. 가모와 그 친자사이에는 친권·부양의 의무 등의 민사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모자관계가 소멸된다.<sup>32)</sup> 또한 만약에 전남편에게 어린 자식이 있고 과부가 이를 데리고 개가할 경우에도,

나승이 죽고 아들 나영노는 모친이 할아버지의 동생에 해당하는 나역과 재혼하는데 따라갔다. 그후 나영노도 죽자 나역은 나영노 몫의 토지를 絶戶라 해서 조정에 헌상했다.<sup>33)</sup>

고오일은 죽었는데 아들은 없고 겨우 비녀 阿沈이 낳은 1살 된 딸 고공손이 있을 뿐이다. 阿沈은 소정5년에 전산을 검교하려고 신청하고 고오일의 친동생인 고오이도 그 해에 차남 고육사를 세워 고오일의 嗣子로 삼겠다고 관에 신청했다. …(중략)… 얼마지 않아, 阿沈은 딸을 데리고 왕삼에게 개가했다. ……관사는 법률에 비취 3/4을 고육사에게 주고 1/4을 고공손에게 남겨, 阿沈에게 소작료를 주어 고공손을 양육하는 자금으로 쓰게 했다. …(중략)… 고공손이 성인이 되기를 기다려 관에 가서 증거문서 발급을 신청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혼자금으로 써라.<sup>34)</sup>

라 하여, 전남편의 재산은 그 자식의 이름으로써, 혹은 양육비로써 보전되었다가, 후에 전남편의 자식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戶絶로서 처리되거나, 혹은 딸이 성인이 된 후에 혼인자금으로 돌려주어야만 했다.

한편 과부가 전남편의 집으로 접각부를 불러 들였을 경우에는 새남편의 집으로 가버린 과부의 사례와는 달리 어느 정도 전남편의 재산을 사용·수익할

32) 滋賀秀三, 앞의 책.

33) 『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 上 「羅械乞將妻前夫田產沒官」 “今羅崇死, 有男羅寧老, 隨母改嫁同會祖之弟羅械, 後寧老又死, 羅械以寧老所分田產, 作絶戶獻于官, (後略)….”

34) 『清明集』 卷7 戶婚門, 女受分 「阿沈高五二爭租米」 “高五一死無子, 僅有婢阿沈生女公孫, 年一歲, 阿沈于紹定五年陳乞檢校田產, 高五二乃五一親弟, 亦于當年陳乞立其次子六四爲五一後, …(中略)… 未幾, 阿沈携其女改嫁王三, 高六四于嘉熙二年稱已出幼, 乞給承分田產, 官司照條以四分之三與高六四, 存一分于公孫, 令阿沈逐年收租, 爲撫養公孫課之資, …(中略)… 候公孫出幼, 赴官請給契照, 以爲招嫁之資.”



수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남편의 자식의 양육과 가업보전, 시 부모봉양과 같은 의무가 전제된 것이었다. 또한 이 전제에 합당하지 않을 경우 에라도,

阿甘은 현재 接脚夫를 들였지만, 3살이 되기 전에 양자로 들인 아들이 있으므로 호절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중략)… 정창이 살아 있을 때 3세이하의 아들을 얻어 양육하였고 그런즉 정창은 호절이 아니고 주선의 고소는 망령된 것일 뿐이다. …(중략)… 먼저 “아감은 이미 접각부를 들였으므로, 이미 전 남편을 위해 아들을 양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안이하게 그 재산을 몰수하려 한 것이라면 더욱더 옳지 못하다. 부인이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양자를 얻어 전 남편의 뒤를 잇게 하고 자신의 몸은 새 남편에게 의탁한 것은 당연한 행동이고, 법률상으로도 금지 명문은 전혀 없다. 비록 그 아들을 양자로 해서는 안 되는 경우더라도, 아감은 접각부를 들였으므로 ‘權給’라는 조문도 있고, 모두 몰수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호령을 조사하면 ‘과부에게 아들과 손자가 없고, 또 동거인 중에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 친족이 없이, 접각부를 들인 경우는 전 남편의 전지, 가옥은 관청을 통해 등록된 뒤에 임시로 급부한다. 그 평가액은 5천관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부인이 後夫의 집으로 시집가기를 원하거나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 비로소 호절의 범에 의거한다’라고 한다. 정창의 재산은 평가액은 200관 정도에 불과하므로 아감에게 급부되어야 하는 것은 상당히 명백하다. 주선은 문외한이고, 다른 사람의 아이가 어리고 집안이 위태로울 시기를 엿보아, 호절이라고 제멋대로 고소했다.<sup>35)</sup>

판관은 “과부에게 아들과 손자가 없고, 또 동거인 중에 재산을 나눠 가질 권리가 있는 친족이 없이, 접각부를 들인 경우는 전 남편의 전지, 가옥은 관청을

35) 『清明集』 卷8 戶婚門, 戶絕 「夫亡而有養子不得爲之戶絕」, “阿甘見在雖招到接脚夫, 而有三歲以下收養之子, 非戶絕分明, …(中略)… 丁昌在日已養得三歲以下之子, 然則丁昌元非絕戶, 朱先之告妄耳 …(中略)… 前謂阿甘已召接脚夫, 不應復爲前夫抱子, 便欲籍沒其業, 則尤未安, 婦人無所依倚, 養子以續前夫之嗣, 而以身托於後夫, 此亦在可念之域, 在法初無禁絕之明文, 縱使此子不當養, 阿甘係召接脚夫, 亦有權給之條, 未當拘沒也, 按戶令, 寡婦無子孫并同居無有分親, 召接脚夫者, 前夫田宅經官籍記訖, 權給, 計直不得過五千貫, 其婦人願歸後夫家及身死者, 方依戶絕法, 據丁昌之業, 所直不過二百餘貫, 其合給阿甘明甚, 朱先無賴, 伺人子幼家危之際, 妄告戶絕”

통해 등록된 뒤에 임시로 급부한다”는 戶冊을 인용하면서 아감에게 전남편의 재산을 ‘權給’이라는 형태로 그 재산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이것은 자식이 없어서 개가하려고 하는 과부에게 제한적으로 전남편의 가산에의 관리권을 인정한 것에 의해 간접적으로 전남편을 위한 立嗣를 장려하기 위한 은혜적인 조치였다.<sup>36)</sup> 접각부를 들인 여성에게는 전남편의 재산을 임시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다만, 접각부를 들인 여성이 전남편의 집을 떠나 접각부의 집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과부가 전남편의 집을 떠나 새남편의 집으로 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관리권마저 잃어 버렸다. 접각부를 들이는 것 자체는 실질적 재혼을 한 것이지만 개가는 아니었다.<sup>37)</sup>

한편, 다음의 판어는 위경선 사후 과부 조씨가 유유광이라는 자를 ‘접각’이라는 명목으로 들여 전남편의 가산을 점거하고 살자, 衆分親인 위경모와 위경열이 소송을 일으킨 사건이다.

…(전략) 조씨는 먼저 위경선에게 시집갔다. 그가 이미 죽어버렸으므로 조씨가 柏舟共美의 뜻을 잘 지킨다면 영원히 위씨 집에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미 유유광에게 시집가고 接脚이라는 명목으로 鵲巢鳩居[까치둥지에 비둘기가 사는 것] 한다면 어찌 위경모 등의 詞訟을 피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것을 理法에 의해 생각하면 조씨의 전남편에게는 魏汝楫이라는 아들이 있고 손자까지 태어났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위경모와 위경열에게는 각각 재산 취득분이 있고, 支書[분할서] 안에는 아직 나누지 않았다고 증언되어 있다. 유유광은 그 가족도 아니면서 그 집을 점거하려 하는 것은 정말로 옳지 못하다. …(중략)… 위경선은 정확히 자손이 있고, 게다가 그의 가족은 동거친족의 공유 재산이어서, 법률상 접각부인 유공사를 불러 들일 수 없다. …(중략)… 조씨는 다시 시집 가서 義로는 이미 인연이 끊겼고, 그래서 전남편의 가족과 재산을 점거할 수 없다. 당연히 유공사 집에 가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섬기면 그것으로 人情과 法意에 합치된다<sup>38)</sup>.

36) 川村康, 임대희 譯, 앞의 논문, 268쪽 참조.

37) 당시 국가가 접각부를 들인 여성의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일정정도의 권리를 인정한 것은 접각부를 들인 이유, 국가의 세금원 확보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38) 『清明集』 卷9 戶婚門, 接脚夫 「已嫁妻欲據前夫屋業」 “趙氏先嫁魏景宣, 景宣既沒, 趙氏能守柏舟共美之志, 則長有魏氏之屋, 宜也, 今已改嫁劉有光, 遂以接脚爲名, 作所鳩居, 豈

판관은 위경선을 이을 자손이 있고 형제가 同居共財하고 있어 법률상 집각부를 들일 수 없다고 보아 조씨가 개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남편의 재산을 접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清明集』판어에서는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모략을 꾸미거나 하여 소송을 일으키는 사례가 꽤 있다.

다음은

阿常은 순검의 처였는데 불행히 남편이 죽었고 오히려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다. 늙었으나 자식이 없으니 그 외로움이 애처롭다 할만하다. 阿常이 人心이 조금이라도 있어 단지 죽을 때 까지 시집을 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더불어 서로 봉양하며 살고 서로 수절하여 죽었다면 進修부의 義와 같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편이 죽고 졸곡에도 이르지 않아 갑자기 (그것을)내버리고 시어머니를 길가는 사람을 버리듯 버리고 여관을 바꾸듯 남편을 바꾸니, …(중략)… 阿侯는 혼자서 기댈 곳이 없어 결국에는 노비인 阿劉부부에게 의지하여 구차하게 살고 있는 즉 …(중략)… 阿常이 개가한 후 2년 동안 한번이라도 와 그 啓處를 방문하지 않더니, 죽음을 듣게 되었고 도리어 그 유산을 취하기 위해 소송을 일으켰다. …(중략)… 아상은 남편을 배반하고 의를 끊어놓고서 어찌 다시 ‘染指의 念’이 있을 수 있는가. 하물며 반드시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략)… 그 아들 장양귀가 장순검의 아들인데, 서순검의 집안에 관계하여 참견하여 번번이 방자하게 소송을 일으키니, 그 뜻은 속이고 위협하는데 있고 情과 理는 증오할 수 있으니 모두 가버운 별로 보아 죽비 20대에 처하고 本府정계에서 내쫓는다.<sup>39)</sup>

能免魏景謨等之詞乎, …(中略)… 揆之理法, 趙氏前夫有子魏汝楫, 且生孫矣, 其屋同居魏景謨·魏景烈! 各有分, 支書內明言未分, 劉有光非其族類, 乃欲據其屋, 誠所未安, …(中略)… 趙氏以其屋爲嫁後自得錢添造, 詳魏景謨詞, 則慶元四年兄弟三人 同起造, 趙氏於慶元六年方嫁歸, 無緣爲魏氏造屋於未嫁歸之前, …(中略)… 趙氏先已不能安其室, 魏氏能勿許其改適乎, 魏景宣非無子孫, 且其屋係同居親共分, 法不應招接脚夫, …(中略)… 趙氏改嫁於義已絕, 不能更占前夫屋業, 合歸劉貢士家, 事姑與夫, 乃合情法”

39) 『清明集』 卷10 人倫門, 夫婦「妻已改適謀占前夫財物」“阿常爲巡檢之妻, 不幸夫亡, 猶有姑在, 老而無子, 羹獨可哀, 阿常若稍有人心, 只當終身不嫁, 與乃姑相養以生, 相守以死,

阿常은 남편인 서순검이 죽자, 시어머니 阿侯를 버리고 장순검과 재혼하였다가 전남편의 집이 호절되어 그 재산이 阿劉부부에게로 넘어갈 것 같자, 소송을 일으켰다. 이 소송에서 阿常이 어떤 명목으로 소송을 일으켰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전남편의 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재혼 후에도 전남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재산에 대해 그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이 잦았던 이유는 무엇일까? 다음의 판어에서 그 해답을 유추해 보고자 한다.

웅진원은 아들이 셋 있었는데, 장남은 웅방, 차남은 웅현, 막내는 웅자라고 한다. 웅자가 죽고 그의 처 阿甘은 이미 개가했고, 오직 미혼인 딸 1명만 있고, 그 호는 田 350把를 갖고 있었다. 원래 그 값이 300관이 되지 못했으므로 조문에 따라서 모두 딸이 받아야 할 몫[女承分]을 급부했다. (그런데) 결혼하지도 못하고 딸마저 죽었다. 지금 두 형은 자신의 아들로 후계를 세우겠다고 싸우고, 아감도 또한 “그 중 100把의 토지는 내가 사둔 것이다”라고 말하며 또한 몫을 요구하려고 있다. 후계를 세운다는 주장은 명목상으로는 비록 동생을 위한다고 하지만, 뜻은 田을 얻으려는데 있다. 나중에 사들였다고 해도 역시 아감도 자기 것으로 가져갈 수 없다. 법률에 따르면, 모두 관으로 몰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관사는 관례대로 몰수해 버리려고 하지는 않는다. 현금 10관족전으로 딸을 매장하도록 하는 것 외에, 나머지 토지는 균등히 3등분해서 각자에게 한 몫씩 급부한다. 이것은 법의는 아니지만, 단지 관사의 배려로, 직접 제비뽑기할 것을 허락한다.<sup>40)</sup>

如陳孝婦之義可也，夫死未及卒哭，乃遽委而去之，棄姑如棄路人，易夫如易傳舍，…(中略)… 阿侯一身無所倚賴，遂依其婢阿劉夫婦以苟活…(中略)… 阿常改嫁之後，兩年之間，更不能走一介，以訪問其啓處，及聞其死也，反興訟以取其遺資，…(中略)… 阿常背夫絕義，豈可更有染指之念，況未必有之乎！…(中略)… 但其男張良貴，係是張巡檢之子，與徐巡檢之家有何干預，而輒橫興詞訟，意在騙奪，情理可憎，合示?罰，決竹篋二十，押出本府界(後略)….”

40) 『清明集』 卷4 戶婚門，爭業 上「熊邦兄弟與阿甘相互爭財產」“熊賑元生三子，長曰邦，次曰資，幼曰賢，熊資身死，其妻阿甘已行改家，惟存室女一人，戶有田三百五十把，當元以其價錢不滿三百貫，從條盡給付女承分，未及畢姻，女復身故，今二兒爭以其子立嗣，而阿甘又謂內田百把係自置買，亦欲求分，立嗣之說，名雖爲弟，志在得田，後來續買，亦非阿甘可以自隨，律之以法，盡合沒官，縱是立嗣，不出生前，亦於絕家財產只應給四分之一，今官司不欲例行籍沒，仰除見錢十貫足埋葬女外，餘田均作三分，各給其一，此非法意，但官司

웅진원의 막내아들인 웅자가 죽고 그 처인 아감이 재혼한 후, 웅자의 戶가 戶絶되었고 남아 있던 딸이 죽었다. 이에 그의 두형인 웅방·웅현과, 아감이 웅자의 재산을 다투는 사건이다. 판관 범서당은 웅방·웅현 형제가 웅자를 위해 후사를 세운다고는 하나 그것은 명목일 뿐이고 아감도 100파의 田을 자신이 사둔 것이라 하더라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면서도, 웅자의 재산을 호절처리하여 몰관하는 대신에 딸의 장례비로 쓸 현금 10관족전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명 이서 균분할 것을 명하고 있다. 결국 재혼녀인 아감에게 전남편의 재산을 급부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아감이 전남편의 재산을 차지하려 한 것에 대해 소송을 당하고 혹은 소송까지 일으켰던 점, 심지어 판관이 전남편의 재산을 재혼한 처가 가져가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柳田節子氏의 주장대로 개가가 모든 권리를 빼앗아 버리지는 않았다.<sup>41)</sup> 개가는 처가 자기 속에 살아 있는 남편의 인격을 벗어버리고 남편의 종을 이탈하는 행위이며, 그와 동시에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본 滋賀秀三씨와 주장<sup>42)</sup>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재혼하여 새남편 집으로 간 여성들이 왜 전남편의 재산 혹은 지참재산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거나 가지고 갔을까? 먼저 당시 혼인에 있어, 여성에게 있어 지참재산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살펴보자.<sup>43)</sup> 송대에는 사대부 계층이든 혹은 일반평민이든 처를 맞이할 때 재산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보편적이었고 또한 중시되었다.<sup>44)</sup> 여성이 자신의 지참재산의 배분

從厚，聽自據拈”

41) 柳田節子, 앞의 논문.

42) 滋賀秀三, 앞의 책.

43) Ebrey는 송대에 있어 지참재산은 다소 이례적인 형태의 재산으로서, 그것이 당시 여성에게 지니는 의미로 다음의 4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지참금은 첩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둘째, 지참금은 나이 어린 신부가 해야 할 역할 중에 중요한 부분인 남편집안의 식구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방편을 제공해 주었다. 셋째, 지참금은 여자들이 곤궁한 처지에 빠지지 않도록 적으나마 방책을 보증해 주었다. 지참금은 과부에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주된 재산이 되었고 재혼할 때 가져갈 수 있었으며, 계사를 지내주기 위한 상속인을 채택하는데 기여가 되었다. 넷째, 지참금은 아내들이 남편의 집안이 번창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P. B. Ebrey 著, 배숙희 譯, 앞의 책, 188쪽 참조.

44) 方麗璇, 「從 <名公書判清明集>看宋代婦女的婚姻生活」, 『宋代社會與法律—名公書判

에 대한 일정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며, 唐代는 남자의 빙재의 절반정도의 지참금을 받았는데 비해, 송대의 미혼여성은 가산분할시 아들 몫의 2분의 1을 받아 그 몫이 어느 시대보다 컸다. 이것은 당시 남송의 주요무대였던 강남 지역의 관습이 반영된 것이다.<sup>45)</sup> 지참금의 다소에 따라 여성이 남편의 집안에서의 지위가 결정되었다. 따라서 여자쪽 집안에서 가장은 딸을 위해서 지참금의 준비를 상당히 중시하였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재혼하는 여성도 지참재산은 필요했을 것이고, 그 결과 자신이 전남편에게 시집을 때 가져온 지참재산, 자신명의로 장령재산을 가져가려 했으며, 심지어 전남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것은 전남편집을 떠나는 여성에게 있어 경제적인 힘이 되었다.

#### IV. 隨母嫁子の 재산문제

한편, 여성이 재혼하여 다른 사람의 집으로 들어 갈 때, 전남편의 자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滋賀秀三은 남편이 사망하고 그 처가 다른 사람에게로 재혼할 때 전남편의 어린 자식이 있으면 특히 그 자식이 아들이면 전남편의 族人 중에서 그를 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sup>46)</sup> 그러나 죽은 가운데 적당한 자가 없을 시에는 모친의 새남편[後夫]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일도 있었다. 송대 여성이 재혼할 때 전남편의 자식을 데려가는 것[이하 隨母嫁子]<sup>47)</sup>은 꽤 보편적이었다.<sup>48)</sup> 『청명집』에서 재혼한 여성이 자식을 데리고 간 경우를

『清明集討論』(東大圖書公司, 1998), 101~102쪽 참조

45) P. B. Ebrey 著, 배숙희 譯, 앞의 책, 178쪽 참조

46) 滋賀秀三, 앞의 책.

47) 재혼하는 모친을 따라간 자식에 대한 표현으로 『清明集』 卷7, 戶婚門에 ‘義子’, 『宋會要』 (151책 식화61상 민산잡록)에는 ‘隨母男’이라 되어 있다. 이들은 모친이 재가하여 가서 새로 맞이한 남편[後夫]를 ‘繼父’, ‘義父’라 하였다.

48) 隨母嫁子에 대한 사례로는 『清明集』 卷10 人倫門, 兄弟「與義兄爭業」; 卷12 懲惡門, 姦穢「士人因姦致爭既收坐罪名且萬教誨之意」; 卷7 戶婚門, 義子「義子包併親子財產」; 卷8 戶婚門, 歸宗「子隨母家而歸宗」; 卷9 戶婚門, 違法交易「鼓誘寡婦盜賣夫家業」; 卷4 戶

살펴보면, 재혼한 여성한 여성가운데 전남편의 자식이 있는 여성 21명 중 10명이 자식을 데리고 갔으며, 그중 9명이 아들이었고 단지 1명만이 딸이었다. 반대로 아들을 전남편의 집에 남겨둔 사람은 없고 딸을 남겨둔 사람이 2명 있었다. 즉 재혼한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전남편의 後嗣가 될 아들을 그곳에 남겨 두지 않고 재혼하는 집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sup>49)</sup>

원채는 “또 맞아들인 처에게 전남편의 아들이 있고 집각부에게 전처의 아들이 있으면 수양하고 수양하지 않는 것을 미리 정하여 훗날의 분쟁을 막아야 한다. 또 전남편의 아들과 後夫의 아들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따라 같이 들어오는가 같이 들어오지 않았는가 또 동거여부를 여러 사람에게 알리고 관가에 밝혀 훗날 분쟁의 단서를 끊어야 한다.”<sup>50)</sup>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隨母嫁子 혹은 집각부의 전처의 자식들로 인해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 많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재혼하는 모친을 따라가는 자식과 관련하여 義父집안에서 발생한 분쟁<sup>51)</sup>을 통해서 隨母嫁子의 의부집안에서의 지위와 친부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다루어 보고자 한다.

婚門, 爭業 上 「隨母嫁之子圖謀親子之業」; 권8 호혼문, 歸宗 「出繼不肖官勒歸宗」; 『清明集』 卷5 戶婚門, 爭業 上 「羅械乞將妻前夫田產沒官」

49) 大澤正昭, 「唐宋變革期における 婚姻と 家族」, 『唐宋變革期における 女性・婚姻・家族의 研究』(2003).

50) 원채, 『원씨세법』 권1 睦親 「收養義子當絕爭端」 “…(前略) 娶妻而有前夫之子, 接脚夫而有前妻之子, 欲撫養不欲撫養尤不可不早定, 以息他日之爭, 同入門及不同入門, 同居及不同居, 當質之於衆明之於官以絕爭端 (後略)…”

51) 『清明集』에 나오는 隨母嫁子와 의부·의부의 자식·친척들사이에 분쟁은 재산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재혼한 여성이 전남편의 자식을 데려간 사례 9건 중 7건(『清明集』 卷7 호혼문, 義子 「義子包併親子財產」; 卷8 호혼문, 歸宗 「子隨母家而歸宗」; 권9 호혼문, 違法交易 「鼓誘寡婦盜賣夫家業」; 卷4 호혼문, 爭業 上 「隨母嫁之子圖謀親子之業」; 卷8 호혼문, 歸宗 「出繼不肖官勒歸宗」; 卷5 호혼문, 爭業 上 「羅械乞將妻前夫田產沒官」)이 의부집의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었고 그중 1건(『清明集』 권10 人倫門, 兄弟 「與義兄爭業」)이 隨母嫁子의 친부의 재산에 대한 의부의 친자식이 탐을 내어 소송을 낸 것이다.

## 1. 隨母嫁子와 親父財產

父系 중심의 전통중국사회에서 血親系의 중심은 남자 즉 부친이었다. 따라서 부모와 어린 자식으로 구성된 家에서 남편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과부와 어린 자식, 공동의 것으로 보유되지만, 만약 과부가 자식을 데리고 改嫁를 할 경우에 그 재산은 친부의 아들의 이름으로써 보전되었다.<sup>52)</sup> 한편 판어에, 隨母嫁子の 친부의 재산을 의부의 친자식들이 ‘諸子均分의 몫’으로 삼아 취하려 한 일례가 있다.

구여는 아황의 전남편의 아들로, 아황이 구운에게 시집을 때 따라온 아들이다. 아황과 구운은 서로 섬기어 다시 구연과 구녕을 낳았다. 구운이 반드시 개인적으로 그 처의 전남편의 아들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만약 田業을 사서 두고자[置到] 한다면 당연히 구운의 이름으로 했을 것이다. 구여의 戶하에 있는 계약문서와 구여 명의로 된 거래문서를 요구해 조사하니, 이는 구여의 죽은 부친의 재산을 운영하여 산 것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구운의 소송장에는 또한 본인 스스로 田業을 사서 구운의 명의로 하였고, 구여 자신이 관리하여 구여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다. 이것은 구운의 본심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소위 위에서 말한 것은 모두 구연 등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다. 구연 등은 단지 구운이 구입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당하고 반대로 의형의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부모가 살아 있다면 별적이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여는 본래 이씨 집안의 아들이고 위조문과는 상관 없다. 다만, 구여가 재산이 있었고 구운의 田産을 다시 분여받지 않은 즉 구연과 구녕 역시 할 말이 없다. 계부를 공경하여 만족하게 하고 모친을 장사지 내니, 구여는 당연히 제자의 분이 있다는 것은 앞뒤 그 마음이 다름으로 불가하다.<sup>53)</sup>

52) “今羅崇死，有男羅寧老，隨母改嫁同會祖之弟羅械，後寧老又死，羅械以寧老所分田産，作絶戶獻于官，(後略)….” 『清明集』 卷5 戶婚門，爭業上「羅械乞將妻前夫田産沒官」

53) 『清明集』 卷10 人倫門，兄弟「與義兄爭業」，“丘如乃阿黃前夫之男，帶來嫁與丘閏，阿黃與丘閏共爭，再生丘寅丘寧，丘閏必不肯私其妻前夫之子，若有置到田業，合作丘閏名字，索到丘如戶下契書，並作丘如名字交關，此是丘如將故父財物營運置到無疑，…(中略)… 丘寅等只合分丘閏置到之業，却無緣分析義兄財產，若謂父母在不得別籍異財，然丘如本是李家之子，不礙上條，但丘如既已有財產，却不得再分丘閏田業，則丘寅丘寧亦自無說，所有供贖繼父葬送母親，丘如合當諸子分之一。”



모친 아황이 구윤에게 재혼할 때 따라온 구여는 친부의 재산을 운영하여 재산을 불렸으나, 의부의 친자식인 구연과 구녕은 거짓 소송장을 제출하여 隨母嫁子인 구여의 재산을 취하려 한 사건이다. 판관은 “구연 등은 단지 구윤이 구입한 재산을 나누어야 합당하고 반대로 의형제의 재산을 나누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만약에 부모가 살아 있다면 別籍異財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구여는 본래 이씨 집안의 아들이고 위조문과는 상관 없다. 다만, 구여가 재산이 있었고 구윤의 田産을 다시 분여받지 않은 즉 구연과 구녕 역시 할 말이 없다”라 하여 구녕과 구연의 소송을 물리치고 있다. 여기서 유의해 살펴보아야 할 점은 隨母嫁子の 친부의 재산에 대해 의부의 자식이 권리를 내세울 수 없으며, 또한 의부의 집에 와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 그 재산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는 점이다. 따라서, 당시 지배층에 있어서 隨母嫁子が 비록 의부의 집에서 의부의 양육을 받고 있다고는 하나 父宗위주의 승계관념으로 인하여 친부의 혈통을 버린 것이 아니며, 그러한 한에 있어서는 친부의 권리를 당연히 이어받는 것이었다.

## 2. 隨母嫁자와 義父財産

隨母嫁子は 의부의 양육을 받을 뿐 원래는 그 집의 혈통을 이어받는 사람은 아니고 親家の 혈통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姓은 친부의 姓을 따라야 했고 義父의 姓을 따르는 것은 冒姓이라 하여 위법이 되었다. 따라서 隨母嫁子は 義父의 후계자가 될 수 없고 家産도 分給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다. 『청명집』에는 의부 및 그 가족들이 隨母嫁子에 대해 의혹과 경계심을 가지거나 의자의 재산에 대한 간섭을 고발한 소송이 꽤 있다. 이에 대해 隨母嫁子の 의부 집의 재산취득을 부정하는 사례가 있다. 다음의 판어에 隨母嫁子인 설용손·설용제 형제가 의부집에서 양육되다가 성인이 된 후에 친가로 되돌아가기 보다는 의부 서상이 나이 어린 친자를 두고 죽고 설용손 형제가 의부의 집안일을 맡자, 서상의 친척인 서희설과 사위인 풍경양이 소송을 일으켰다.

서상은 후처 부씨가 데려온 아들을 받아주고 서씨의 성을 달아 주었다. 이것은 법률에 저촉되지만 20년 가까이 어디에서도 이간시키는 말이 없었던 것은 아마도 예전 사람들의 후덕한 풍속 때문이다. 지금 세상에서는 좀처럼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설용손 등은 義父 서상이 죽은 후에 역시 사정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는 것이 좋고 부씨로서도 핏줄을 돌려 보내야 했는데 지금까지도 우물쭈물하고 있다. …(중략)… 설용손이 연장자여서 집안 일을 물려받고 서씨의 친자식이 반대로 유유낙낙하게 지도에 따르는데, …(중략)… 서씨의 죽음이 안심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도 당연하다. …(중략)… 설용손과 설용제에게 말해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설씨의 제사를 행하게 한다. 다시 또 서씨 성을 따르고 다시 서씨 집안일에 간섭해서는 안된다.<sup>54)</sup>

이 소송사건에 대해 판관 구헌은 “설용손과 설용제에게 말해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설씨의 제사를 행하게 한다. 또 서씨 성을 따르고 다시 서씨집안 일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라 하여 隨母嫁子인 설용손 형제가 비록 의부에 의해 서씨 성을 부여 받았지만 서상을 이을 수 없으므로 설씨 집안으로의 귀종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阿鄭은 전남편 소씨의 아들 소진손이라는 자를 데리고 와서 요씨의 집에서 키웠다. 소진손은 그 때 5살이었고, 요악은 소진손을 키우고 성인이 된 후 결혼을 시키고, 또한 대우하는데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아정이 좋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악은 이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하며 아직 마음을 연 것이 아니어서, 결혼 시킨 후에는 별거시켰다. 그런데 요악의 妾腹의 아들로 요우좌가 있는데, 요악이 주의깊게 소진손을 대할 방비를 세

54) 『清明集』 卷8 戶婚門, 歸宗「子隨母家而歸宗」, “舒常容其後妻傅氏帶來之子, 冒姓舒氏, 雖是礙法, 然近二十年, 長幼無間言, 似有古人忠厚之風. 今世未易有此, 但薛龍孫等於其義父舒常身死之後, 却宜自歸本宗, 而爲傅氏者亦宜以養遺之, 今乃盤旋不去, 宜乎舒氏之族人不能平也, 婦人何所知識, 但見其帶來之子冒姓命名, 已歷年久, 將謂可分舒氏之業, 而薛龍孫年長, 主張家事, 舒氏親子反拱手聽命, 天下安有是理哉, 此舒希說等之訟所由起也, 舒常親子舒思義已自長成, …(中略)… 正不待薛龍孫代之幹蠱, 仰薛龍孫龍弟, 各自歸奉薛氏之祀, 不得更冒姓舒氏, 及干預舒氏家事 (後略)…”

운 것은, 앞으로 요우좌에게 해가 될까봐 우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씨와 요악이 잇달아 죽자, 소진손은 악사를 실행에 옮겨 幼弱한 요우좌를 학대하고 요승이라는 이름을 사칭해 요악의 비복을 자신의 밑으로 포섭하고, 요악의 재물을 모조리 빼앗고 …(중략)… 그런 후 요악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 요악의 업무를 계승하고 자신의 성명을 바꿨다. 이름은 바꿀 수 있을지 모르나, 법률은 바꿀 수 없는 법이다. 만일 소진손의 입장에서 요악의 재산을 손에 넣고, 요악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천하에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간 자는 모두 親父를 버리고 타인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원래의 핏줄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 핏줄은 混交해지고, 인륜의 질서는 복잡해지고, 모든 천하는 짐승의 등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중략)… 소진손은 왜 이것을 손에 넣으려 했을까. 지금 소진손이 요승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공술은 명백하고, “함부로 친아버지를 배신하고, 손쉽게 이름을 바꿔, 친아버지의 핏줄을 끊고, 의무를 배반해 그 재물을 빼앗고,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모두 해롭게 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 모두 무겁게 벌을 내리야 한다. 그러나 소인이 욕심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이므로, 무겁게 벌을 내릴 필요는 없고, 형을 가볍게 해서 장100을 부과하고, 요악의 집에서 가져 온 은, 화자, 箱籠, 모든 물건을 강제로 반환시키고, 요우좌의 수령서를 받아서 보고하라.<sup>55)</sup>

隨母嫁子인 소진손이라는 자가 의부인 요악에 의해 양육되고 성인이 된 후에 결혼도 하였으나, 요악사후, 그 친자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가 자신보다 어리다는 것을 기회로 하여 의부의 집에 들어가 의부의 재산과 비너를 차

55) 『清明集』 卷7 戶婚門, 義子「義子包併親子財產」“姚岳晚娶阿鄭, 阿鄭携前夫蕭氏子, 曰蕭眞孫者, 就育于姚之家, 眞孫且五歲矣, 姚岳拊育之, 以至於長成, 而爲之婚娶, 待之甚恩, 以阿鄭故也, 然姚岳雖恩之, 未嘗不待之, 自其既娶, 使之別居, …(中略)… 盖2姚岳庶生親子曰虞佐, 姚岳深爲眞孫之防, 正懼其他日自爲虞佐之援耳, 夫何阿鄭死, 姚岳相繼而死, 眞孫之姦貪遂行, 欺凌虞佐之幼弱, 詭冒姚崇之姓名, 占誘姚岳之婢僕, 豪奪姚岳之財物, …(中略)… 歸投姚岳之主家, 既繼姚岳身役, 以自改其姓名, 不知姓名可改, 而條法不可移, 使蕭眞孫而可以貪姚岳之財, 冒姚岳之子, 則凡天下隨母改適者, 皆將舍其父而爲他人子, 盡忘其本, 爲利之趨, 族屬混淆, 將胥天下爲禽獸歸矣! …(中略)… 財物, 姚氏之財物也, 婢僕, 姚氏之婢僕也, 蕭眞孫豈得而遽有之, 今遽眞孫作姚崇名供招分明, 以言其妄背親父, 輒改其姓名, 以絕滅其嗣續, 辜負義父而奪穰其財物, 擾害其沒存, 皆當重寘于罰, 以其小人因貪犯法, 不足深責, 從輕勘杖一百, 監還搬運姚岳家銀會箱籠, 但干物件, 取姚虞佐領足將申”

지하고 심지어는 요악의 업무를 계승하고 자신의 이름을 ‘요승’으로 바꾼 사건이다. 판관은 “만일 소진손의 입장에서 요악의 재산을 손에 넣고, 요악의 아들이 될 수 있다면, 아마도 천하에 개가한 어머니를 따라간 자는 모두 親父를 버리고 타인의 아들이 될 수 있고, 원래의 핏줄을 모두 잊어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만 쫓아, 핏줄은 混交해지고, 인류의 질서는 복잡해지고, 모든 천하는 짐승의 등지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라 하여 隨母嫁子가 의부의 아들이 될 수 없고 당연히 그의 재산에 대한 承分이 없다고 보아 장100대를 소진손에게 처벌을 하였다. 아울러 판관은 “사건은 풍기에 관계된 것이므로 변화가에 이 판결을 게시한다”라 하여 이러한 유사한 사건의 경계로 삼으려 하였다.

위 두 사례에서 의부와 의부의 친척들에 있어 隨母嫁子에 대한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 『청명집』 권8 호혼문, 歸宗「子隨母家而歸宗」에 설용손 형제가 의부인 서상의 재산을 취하려 한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친자식인 서사의가 아니라, 친척인 서희설과 사위인 풍경양이었다. 그럼 이들이 왜 소송을 일으켰을까? 그 이유는 판관 구헌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다. 판관은 “사위인 풍경양은 사위면서 조용히 있지 않고 처를 설득시켜 어머니(부씨)를 고소한 것은 이익을 겨냥해서 일 것이다. 어찌 이것이 정말로 서씨를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라 하여 풍경양이 서상의 재산이 隨母嫁子의 손에 들어갈 것을 염려하여 서상의 재산에 대한 일정한 몫이 있는 그 처를 설득시켜 처의 새어머니를 고소케하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결국 隨母嫁子가 의부의 재산을 병탄하고자 할 때 이에 대한 승분 혹은 이익과 관련이 있는 친척들은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제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卷7 戶婚門, 義子「義子包併親子財產」에서 의부 요악은 후처 阿鄭이 데려온 소진손을 양육하고 결혼시켜준 것은 그 처 아정에 대한 애정의 방편이었다. 이후 그는 소진손으로부터 자신의 친자식인 요우좌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그를 별거시켰다. 이렇게 볼 때 의부에게 자식이 있고 의부집안에 가산에 대한 일정한 몫이 있는 친척들이 있을 시에 隨母嫁子는 의부 혹은 그 친척들에게 그다지 환영받는 존재는 아니었고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판어에,

이자흠은 몇 살 되지 않아 어머니가 재가할 때 담엽화에게 데려간 아들이 되어, 30년에 걸쳐, 친부자와 같이 長育의 은혜를 입어 왔다. 그러나 이자흠은 德을 배반하고 義를 잊고, 그 어머니와 음모를 꾸며서 담엽화와 그 친아들 사이를 이간해서 담엽화의 가산을 독점하려고 했다. 담엽화는 어리석게도 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고 후처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이자흠의 간계에 넘어가 전처의 아들을 쫓아내고, 억지로 계약서를 작성시켜서 토지를 전부 李子欽에게 주어 버렸다. …(中略)… 이자흠은 戊辰年(嘉定원년 1208년)에 모친이 담엽화에게 시집갈 때 데려간 자식이었는데 지참한 動産도 없고 친부에게도 토지는 없었다. 이자흠은 성인이 되어서도 취직하지 않고 譚念華에게 부양되고 아내도 얻었다. 그 모친 위씨는 담우길의 형제(전처의 아들)를 증오하고, 담엽화에게 간악하게 말해서 내쫓게 하고, 이자흠만을 곁에 두게 했다. 담엽화의 動産은 이자흠에게 옮겨지고, 토지는 이자흠에게 매매를 가장해서 주어지고 가옥의 종류도 전부 이자흠의 수중에 돌아가 담우길의 형제는 손도 댈 수 없게 되었다. …(中略)… 官司가 만약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이자흠의 나쁜 계획에 현혹되어 담엽화의 개인의 뜻을 이루게 해 버리면 담우길의 형제는 굶어 죽고 譚씨의 귀신은 굶어버리기에 틀림없다. …(中略)… 이자흠이 제출한 10통의 계약서는 전부 이 자리에서 파기하라. 縣에서 本保에 통지시켜서, 譚씨의 족장을 소환하고, 담엽화 소관의 토지 및 이자흠의 명의로 구입한 토지를 전부 법률대로 여러 아들에게 均分시켜라. 이자흠은 이러한 죄상이 있는 이상, 본래 均분자 중에는 포함될 수 없지만, 일단 오래 동거하고 담엽화에게 매우 사랑[鍾愛]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일정한 몫을 준다.<sup>56)</sup>

56) 『清明集』 卷4 戶婚門, 爭業 上 「隨母嫁之子圖謀親子之業」, “李子欽甫教歲, 卽隨其母嫁于譚念華之家, 受其長育之恩, 凡三十年矣, 其與之親父子何異, 而李子欽背德忘義, 與其母造計設謀, 以離間譚念華之親子, 圖占譚念華之家業, 譚念華愚蠢無知, 昵於後妻之愛, 墮於李子欽之姦, 遂屏逐其前妻所生之子, 勒令虛契字, 盡以田產歸之于李子欽, ……據隣保所供, 究實狀, 李子欽係戊辰年隨母嫁譚念華, 隨身并無財本, 前父亦無田業, 李子欽長成之後, 亦不會作是何生事, 并係譚念華與之衣食, 與之嫁娶, 其母阿魏憎惡譚友吉兄弟, 讒於譚念華, 而逐之, 止存李子欽在旁, 凡譚念華之財物, 則搬傳與李子欽, 至於屋宇之類, 皆一併爲李子欽所有, 而譚友吉兄弟并不染指焉, 此豈近於人情也哉, ……揆之法意, 揆之人情, 無一可者, 而李子欽乃欲以口舌爭之, 其可得乎, 李子欽雖一村夫, 而其姦狡爲特甚, 三十年包藏禍心, 以毒害譚友吉兄弟, 苟可以遂其兼并之圖者, 無所不用, 其至使譚友吉兄弟不少知禮, 則以不肖之心應之久矣, 安肯逐之出外則安心於出外, 勒之書契則俛首以書契, 隱忍以至今日, 而後興爭哉, 其意蓋恐重傷父之心耳, 及其父已死, 然後有詞於官, 蓋其

이자흠은 모친인 위씨가 담엽화에게 재혼해 갈 때 따라갔다. 위씨는 담엽화와 그의 전처의 아들인 담우길 형제 사이를 이간질시켜 그의 재산을 모두 隨母嫁子인 이자흠에게 주었다. 이때 담엽화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매매’형식을 취하여 이자흠에게 재산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자흠이 담엽화의 재산에 대한 應分親이 아님을 설명해 준다. 또한 판관 호석벽은 구양수의 『신오대사』 권36 『義兒傳』의 ‘세상의 길이 쇠퇴하고 인륜이 빗나가고 친과 소의 理가 전도되어 버렸다. 골육간에 살상이 발생하고 핏줄이 이어지지 않은 자가 親子가 되었다’라는 구문을 인용하면서, “지금 담우길 형제는 담엽화의 친자식이면서도 거짓 말 때문에 추방당하고 자신의 집을 가지지 못한 채 이자흠이 오히려 그것을 점유했다. 친과 소의 常理에 거스른 것이 아닐까. 하잘 것 없는 소인은 世道, 인륜의 성패에 개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리가 쌓여 딱딱한 얼음이 된다.’라고 하듯이 사물은 조금씩 진행되는 법이므로, 일치감치 바로잡고 미리 정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라 하여 이자흠에게 장 100대의 처벌을 하고 그의 의부재산의 점유를 바로잡고 있다.

위의 세 사례에서 판관은 모두 隨母嫁子가 의부의 뒤를 이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친부의 家를 잇고 제사를 지내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隨母嫁子가 의부의 재산을 취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반면, 호석벽은 이자흠에게 “이자흠의 죄상은 그대로이고 본래대로라면 균등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아무튼 한 집에 오랫동안 동거하고 또 담엽화가 특히 사랑했으므로 한명 분을 준다”라 하여 이자흠이 의부 담엽화와 오랫동안 동거했다는 점과 담엽화가 총애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그에게 ‘一分’을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판관 호석벽이 隨母嫁子인 이자흠에게 의부의 재산을 허락된 것은 그의 자의적·인정적 판단이 아니라, 가업에 종사하고 노부모의 봉양과 死後의 장례 등과 같은 隨母嫁子의 의부집에서의 현실적 역할을 고려한 것과 동시

---

勢有不容已者矣, 官司若不與之從公定奪, 惑於李子欽之姦謀, 以成譚念華之私志, 則譚友吉之兄弟必將飢餓而死, 譚氏之鬼不其餒而, ……所合, 將李子欽齋到契書十道, 并當廳毀抹, 送縣行下本保, 喚集譚氏族長, 將譚念華所管田業, 及將李子欽姓名買置者, 并照條作諸子均分, 李子欽罪狀如此, 本不預均分之數, 且以同居日久, 又譚念華之所鍾愛, 特給一分”

에, 송대에 들어와 義子가 제도적으로 인식의 대상이 되고 특히, 隨母嫁子의 재산권과 관련한 정부의 태도의 변화와 관련<sup>57)</sup>이 있다. 즉 재혼하는 여성들이 전 남편의 자식을 데려가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그들의 의부집에서의 정신적·현실적인 기여가 늘어나게 되고 또한 송정부로서도 의부집이 戶絶될 경우에 몰관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경작권을 주고 세를 받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다.

한편 아래의 判語는 모친이 鄭醫에게 재혼할 때 따라간 장달연이라는 자가 친부의 일족 장영의 후사가 없자, 그의 후사가 되려 관에 소송을 제기하자 장영의 모친인 유씨가 이를 거부하는 소송이다.

張介然은 세 아들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 처 유씨는 아직 살아있고 그 장남 張迎은 진씨를 처로 맞이했지만 일찍 죽어 아들이 없었다. 요컨대 유씨는 頑健하고 형제는 함께 살며 가산은 분할하지 않고 가사를 모두 모친 유씨의 명령에 따르고 있어, 그래서 장남이 죽어도 그 처는 안심하며 살고 있었다. 이것은 불행 중 다행이었다. 지금 族人 張達然이 송장을 제출해 “숙부 장영에게는 사자가 없고, 나는 소목에 상당하므로 숙부를 계승해야 합니다”라고 말해 왔다. 유씨는 백발머리의 늙은이지만, 종종 법정에서 찾아와서 장달연을 세우려 하지 않고 그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다. 공술을 조사해 보니, 장달연이 사

57) 송조는 건국초 戶絶財産法을 정했는데, 그 재산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딸들이었다. 그런데 天聖元年(1023)에 이르러서는 호절재산법을 고쳐 장기간 의부의 집에서 동거하고 경작하면서 세납을 충실히 했다면 義男도 법적으로 재산권을 얻게 되었다. (欲乞應義男·接夫·入舍孀, 并戶絶親屬等, 自景德元年已前, 曾與他人同居佃田, 後來戶絶, 至今供輸不闕者, 許於官司陳首, 勘會指實, 除見女出嫁依元條外, 餘并給與見個人, 改立戶名爲主, …(中略)…從之) 天聖 4년(1026)에는 의부에게 친자가 없는 경우에 호절재산에 한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고 (四年七月, 審刑院言, 詳定戶絶條貫, 今後戶絶之家, 如無在室女有出嫁女者, 將資財將宅物色, 除殯葬營齊外, 三分與一分, 如無出嫁女, 卽給與出嫁 親姑姊妹姪一分, 餘二分, 若亡人在日親屬及入舍孀義男隨母男等, 自來同居營業佃田, 至戶絶人身亡, 及三年已上者二分, 店宅財物莊田給爲主, 如無出嫁姑姊妹姪, 並全與同居之人, 若同居未及三年, 及戶絶之人子然無同居者, 並納官, 莊田依今文均女近親, 如無近親, 卽均與從來佃田或分種之人承稅爲主, 若亡人遺囑證驗分明, 依遺囑施行, 從之) 신종매(元豐 6년, 1083)에는 보감법의 추진으로 친자가 있는 경우에도 의자의 재산권이 인정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元豐 6年, 提舉河北保甲司言, 乞義子孫舍居墻遂母子孫接脚夫等爲保甲者, 候分居日, 此有分親屬給半, 詔著爲令, 按今令文, 外人曾與本家同居久者, 許給分數, 恐立法因此, 然深詳此法, 是特欲優立科條, 使外人肯以它姓代充保甲焉耳). 川村康, 임대희 譯, 앞의 논문, 277~280쪽 참조; 陸貞任 「宋代養子の 財産繼承權」, 『東洋史學研究』 제74집(2001).

자가 되어서는 안되는 세가지 이유가 판명되었다. 유씨의 송장에 따르면, “장달연은 생모가 鄭匠와 재혼할 때 데리고 와서 키운 아이이므로 결국 정씨의 양자입니다. 증거가 될 만한 현의 기록이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유씨의 송장에 의하면 “장달연은 원래 張自守의 아들로, 형제는 두 명이고 형 全老는 방탕해서 돌아오지 않고 淮甸에서 죽었습니다. 자수의 집안은 이미 戶絶되었고, 만일 장씨 성을 계승하려 한다면 자수의 戶를 계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주장에는 일리가 있다.<sup>58)</sup>

여기서 유씨가 판사에 나가 자신이 장달연을 아들 장영의 후사로 반대하는 이유로 “장달연은 생모가 정의에게 시집갈 때 따라가 그 집에서 抱養되었고 결국에는 정씨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현에 증거문서가 있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 주목해 볼 때, 장달연은 의무 정의의 양자가 되었고 이미 현에 의해 증명 받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隨母嫁자가 의무의 嗣子 즉 대를 이을 자식이 되는 경우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해서는 안되리라 본다. 남송사회에서 後嗣가 없는 집안에서 일족 가운데에 同宗昭穆 상당자가 없을시에 이성양자의 수양이 보편적으로 행해졌으며, 이성양자를 세움에 있어 ‘3세 이하의 기아’의 수양도 있었겠지만 처족의 아이를 데려와 후사로 삼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sup>59)</sup>, 의무가 자식이 없고 그 일족 중에서도 적정자가 없을시에

58) 『清明集』卷7 戶婚門, 立繼「爭立者不可立」, “照得張介然有三子, 介然身故, 其妻劉氏尙存, 其長子張鏜娶陳氏, 早喪而無子, 蓋劉氏康強, 兄弟聚居, 產業未析, 家事悉聽從其母劉氏之命, 所以子雖亡, 寡婦安之, 此不幸中之幸也. 今有族人張達善狀, 稱叔張迎亡嗣續, 自以召穆相當, 今應承繼, 劉氏年老垂白, 屢造訟庭, 不願立張達善, 其詞甚功, 竊詳所供, 見得張達善不當繼紹有三, 據劉氏狀稱, 張達善隨所生母嫁鄭匠, 抱養於彼家, 遂爲鄭氏之子, 有縣案可證, 又據劉氏狀稱, 張達善原係張自守之子, 兄弟兩人, 其兄全老漂蕩不歸, 死於淮?, 自守之戶已絕, 若欲繼張氏, 合當繼自守之戶, 此說亦有理, (後略)…”

59) 川村康는 남송에서는 이성양자에 대한 제한이 대폭 완화되어 ‘棄兒’라는 제한은 사실상 소멸되고 적어도 동거 혹은 總麻이상의 親戚, 구체적으로는 처나 母의 일족이면 후계자로서의 收養이 공인되도록 되어 있었다. 이 변화는 단순히 判語가 당률의 ‘3세이하의 버려진 아이의 규정을 확장해석’한 것뿐 아니라, 국가의 제정법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는 적당한 同宗昭穆相當者가 없을 때에는 ‘무리해서 동성자를 찾는 것보다, 오히려 이성자 특히 女系혈족이나 처의 친족에서 후계자를 맞을 것’ 이 송대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이성양자에 있어서는 棄兒收養보다도 오히려 이러한 양자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고 주장하였다. 川村康, 「宋代における養子法—判語を主たる



동거하면서 양육해온 隨母嫁子를 자신의 嗣子로 삼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해 볼만 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 재혼하는 여성이 전남편의 자식 가운데 유독 아들을 많이 데려간 이유와 성인이 된 隨母嫁子를 친부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의도를 추측해 볼 수도 있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청명집』에 나타난 재혼을 둘러싼 재산분쟁을 검토함으로써 송대 여성의 재혼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전남편의 재산문제와 隨母嫁子の 재산문제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바를 정리함으로써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송대 여성의 재혼은 상당히 보편적인 현상이었고 혼인자유권 역시 축소되지 않았다. 오히려 ‘접각부 제도’와 ‘혼인 후 外出하여 3년간 소식이 없으면 개가를 허락한다’ 등과 같은 법규정이 송대 여성의 혼인자유권을 유지시켰다. 송대 여성의 재혼에 대해 판관들의 태도는 폐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개방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신유학의 수요자들로서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절 관념’을 일반 여성들에게 고취하여 교화하고자 하였다.

둘째, 재혼한 여성의 지참재산과 전남편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을 통하여 송대 여성에게 지참재산의 의미와 전남편의 재산을 취하려 한 원인을 알아보았다. 이것은 당시 혼인제도에서 재산을 중시하는 풍조로 인한 것으로써 남편 사후 전남편의 집을 떠나 재혼을 하든 歸宗을 하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경제력이 송대 여성들에게 요구되었다. 특히 재혼하려는 여성은 지참금이 필요했을 것이다. 과부들은 경제력 확보를 위해 지참금 마련을 위해 전남편의 재산이 필요했을 것이고 자신의 명의하에 있던 畝田을 가져갔다. 畝田의 성격상 衆財일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전남편의 衆分親과의 분쟁이 불가피하였다. 또한 일부 재혼여성들은 전남편의 재산을 소송을 통해 자기 것으로 하였다.

셋째, 隨母嫁子의 친가와 의부집에서의 재산상의 권리를 살펴보았다. 隨母嫁子は 재혼하는 모친을 따라 의부집에서 양육을 받고 성인이 되어서는 친가로 돌아가 친부의 혈통을 이어야 했으며 그의 친부에 대한 승계권은 변함이 없었다. 설령 의부집으로 가져간 친부의 재산과 그 재산으로 재산을 늘렸다하더라도 그것은 의부의 자식들과 균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한편 의부집에 있어서 隨母嫁子は 의부의 재산을 둘러싸고 한편으로는 경계의 대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의 몫을 받는 존재였다. 뿐만 아니라 隨母嫁子は 의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 소송을 일으키기도 하였는데 소송에서 의부집의 재산에 대한 몫을 거절당하기도하고 一分을 분여받기도 하였다. 隨母嫁子の 의부재산에 대한 권리는 점차 커져 갔다. 그것은 의부집에서의 隨母嫁子の 현실적·정신적 기여가 고려된 점과 아울러, 송정부가 이들에 대해 제도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송대 특히 남송대 이성양자의 수양이 보편화된 점에 착안하여 隨母嫁子が 의부의 뒤를 이을 존재가 될 수 있었을 가능성도 지적하였다.

## The Remarriage of Women and the Problem of Property in Sung China through the Study of 『Ming-kung shu-p'an ch'ing-ming chi』

Woo, Sung-Sook\*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remarriage of women in Sung China by analyzing the text of a judicial decision, mentioned in 『Ming-kung shu-p'an ch'ing-ming chi』, law reports of southern Sung China in the latter half of the thirteenth century. And another aim of this thesis is examining the complicated and various aspects of the problem of property and child caused by the remarriage through the study of 『Ming-kung shu-p'an ch'ing-ming chi』.

This thesis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of all, this thesis tried to examine the pattern of the remarriage of women in Sung China and the point of view of the ruling classes at that time by understanding how the ideal varies from the actual judgement when the judges, the consumers of new-confucianism in those days, dealt with the suit of remarriage in 『Ming-kung shu-p'an ch'ing-ming chi』.

Secondly,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right of women, especially the right on property caused by not maintaining unmarried but remarrying after the death

---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of their husbands, this thesis considered the right on property in the aspect of their dowry and the property of the former husbands. Also, it dealt with the reasons that they adhered to property.

Finally, this thesis examined the right on property of son who followed his remarried mother in his own father's side and stepfather's, and the change of the Sung government's attitude to him.

The remarriage of women in Sung China was a general phenomenon. Such as 'inviting husband' and 'a wife is able to remarry if her husband went out after marriage and then nothing was heard from him for 3 years', laws and regulations for women's remarriage were newly made. Also judges at that times were still open for the remarriage of women in Sung China in realistic application of a law, unlike their ideal.

When women in Sung China remarried they could take their own dowry, the property increased with it and even the property of their former husband's with them. This is related to the trend that was important for property in the marriage system.

Son who followed his remarried mother still got not only his own father's right including the right on property but also his stepfather's right on property with being recognized the physical and mental contribution in his stepfather's house. Also this thesis mentions to the possibility that son who followed his remarried mother can be his stepfather's successor.

**[Key Word]** remarriage, dowry, property, son who followed his remarried mother  
[隨母嫁子]